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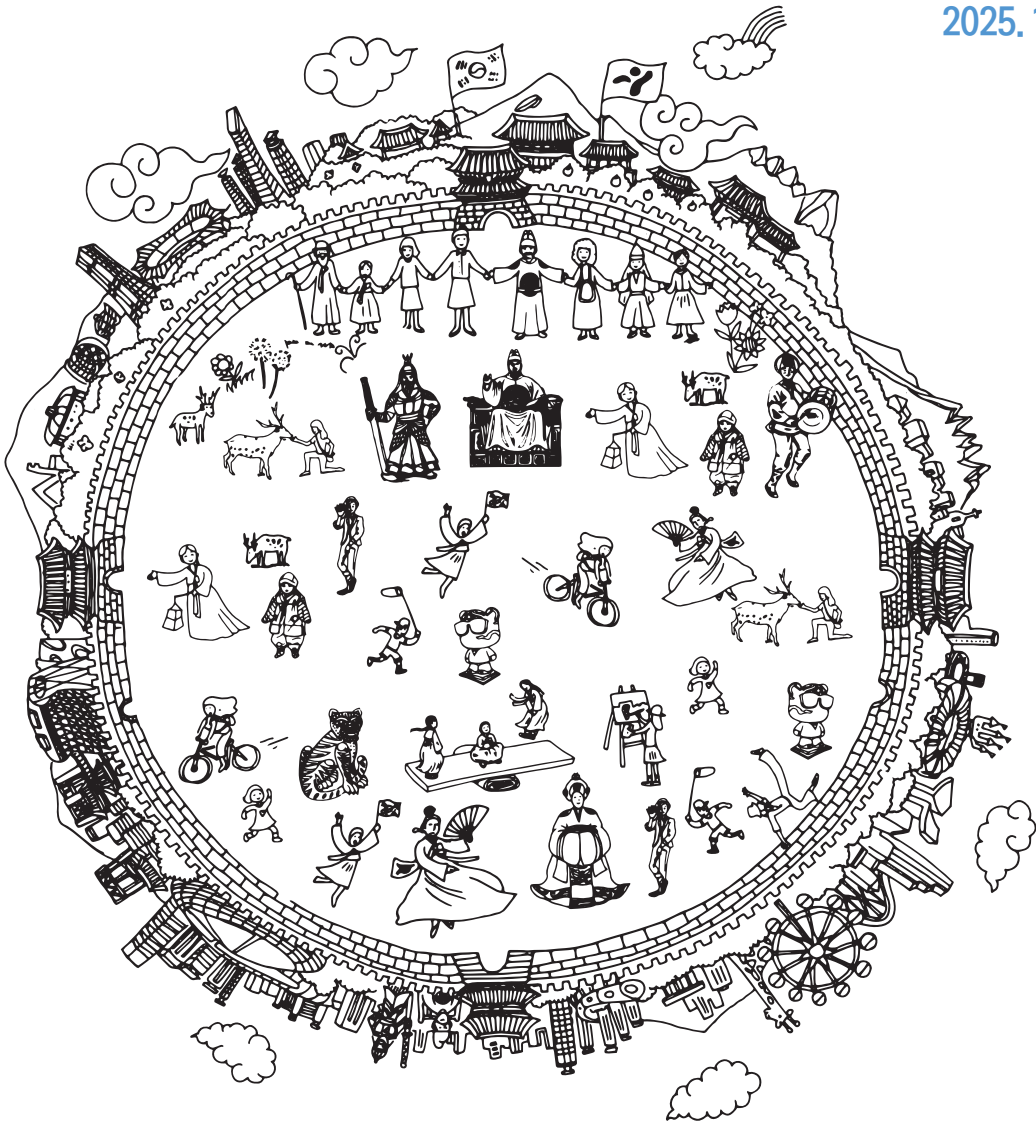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32호

2025. 1. 1.(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41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9411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941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9413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41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941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규 칙]

제46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
제46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훈 령]

제1060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	26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5년	‘ 24년 월정수당에 ‘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	‘ 25년 월정수당에 ‘ 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사전에 의결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정비함(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1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부정사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 나.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7호를 각각 제9호로 하고,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지원

8.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각 호 사업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8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또는 출산한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등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바 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자영업자등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인 자영업자등” 용어 정의(제2조제9호 신설)
- 나.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4조의8 신설)
- 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 규정
(제5조제1항제8호)
- 라.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 대상 육아용품 구매 지원 근거 마련(제5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3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를 “(정의)”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4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를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로,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를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으로,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 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 27. 12. 31.까지 3년 연장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과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명칭 변경(제4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1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167명”을 “19,1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별표 4의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이하 소계	10,207	
전문경력관 소계	161	

같은 표 아래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6의 경찰공무원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정란 다음에 경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찰공무원 계	7					
경감	4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총 정원 19,167명에서 19,171명으로 4명 증원)

2. 주요내용

-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직속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 증원(+4명)
 - 경감 +4명
-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5급이하 △1 → 전문경력관 +1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디딤돌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디딤돌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소득과장”을 “디딤돌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안심소득”을 각각 “디딤돌소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를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6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6.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제7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를 “(관광체육국)”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를 “(평생교육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8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5항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19호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4호 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를 “(물순환안전국)” 으로 한다.

제10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1항 중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를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로,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을 “지방녹지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사무 및 직제순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본부·국의 사업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및 직제순 조정

- (기후환경본부)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사업 통합 추진을 위하여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차마일리지)사무’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로 이관(←친환경건물과)하고, 친환경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색에너지과의 직제순 변경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를 미래공간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 개관 도래에 따라 ‘서서울미술관 운영·관리’ 사무 신설
-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 관련 업무량 축소에 따라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관련 조문 정비

나. 규칙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서울연구원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 (복지실) ‘디딤돌소득(←안심소득)’ 명칭 변경에 따라 부서명 및 소관 사무 명칭 변경
- (문화본부) 서울시 미술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명시
- (평생교육국)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69	429	1,134	5,171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19	420	355	4,981	225
-------	--------	-------	-----	-----	-------	-----

같은 표 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	104	77	8	7	9	3
-----	-----	----	---	---	---	---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85	62	1		18	4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의무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공업연구관란 아래 공업또는소방령란을 삭제한다.

5급 소계	1,626	1,085	56	58	369	58
행정	751	548	52	26	73	52
의무	73	4		4	65	

행정또는보건	7	7				
행정또는시설	77	62			12	3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3			12	
행정·공업또는시설	74	65		1	8	
공업또는시설	21	8	1	1	11	
공업또는환경	13	11			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3	1,959	177	106	1,392	99
행정	1,439	887	147	44	292	69
사회복지	28	24	1		3	
사서	19		1	4	14	
전산	103	77	3	3	18	2
공업	350	105	6	5	232	2
의료기술	47	2		3	42	
환경	49	30		12	7	
시설	612	350	3	2	238	19

시설관리	30	3			27	
운전	40	21	1	1	17	

행정또는녹지	12	5			7	
--------	----	---	--	--	---	--

행정또는시설	52	49			3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9			17	
-----------	----	---	--	--	----	--

행정·공업 또는시설	82	73		1	7	1
---------------	----	----	--	---	---	---

기계운영	81	1			80	
------	----	---	--	--	----	--

사무운영	27	9	1	1	15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녹지또는시설란, 행정·간호또는보건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계운영란 아래 화공운영란을 삭제한다.

7급 소계	3,290	1,312	122	131	1,668	57
행정	1,210	652	88	59	369	42
사회복지	34	25			8	1

사서	22	1	1	7	13	
전산	133	77	4	9	42	1

공업	402	19	6	10	365	2
----	-----	----	---	----	-----	---

녹지	93	13		2	78	
간호	140	12		3	125	
의료기술	42	2		1	39	
시설	546	233	3	5	297	8
시설관리	7	2			5	
운전	61	12	1	2	46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40	34			4	2
행정또는전산	14	7			7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5			21	
행정·공업 또는시설	44	40		2	2	
행정·녹지 또는시설	6	5			1	
행정·간호 또는보건	3				3	
행정·공업· 시설·전산	13	11			2	
공업또는시설	12	4			8	
전기운영	37	1			36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전산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농업또는녹지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또는전산란 아래 행정또는공업란을 삭제하며, 농업또는녹지란 아래 토목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9	123	38	46	861	1
행정	95	13	7	10	65	

사서	6			2	4	
전산	18	5		5	8	

시설관리	215			2	213	
운전	84	13	3	11	57	

농업또는녹지	5				5	
--------	---	--	--	--	---	--

전기운영	9	1			8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04	40	13	5	45	1
------	-----	----	----	---	----	---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운전란,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90	3	3	2	482	
행정	15		1		14	
사서	6			1	5	

운전	5				5	
시설관리	298	1		1	296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연구사 소계란 아래 학예연구관, 환경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0		200	190	
연구사 소계	337	14		158	165	
학예연구	101	11		2	88	
환경연구	73			59	14	

같은 표 아래 “※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298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1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4		7,270		
소방령	201	29		172		
소방위	515	38		477		
소방장	833	40		793		
소방사	3,616	25		3,591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소방정또는시설서기관” 을 “소방정또는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 대응 및 재건축·재개발 공정관리 등 시정 주요사업의 실무인력 확보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 5급 +5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1명, 9급 △33명

나. 소방업무 안전관리 총괄·지원 전담 인력 확보 및 119안전센터 현장 인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 소방령 +1명, 소방위 +33명, 소방사 △34명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60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을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송출기준”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난유형 별”을 “재난유형별”로, “방송문안”을 “재난문자방송문안”으로 한다.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상호합의서”를 “사항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용책임관 및 운용책임자)” 를 “(운영책임관 및 운영책임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문자방송 운영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관은 재난안전실장, 운영책임자는 재난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민방공 경보와 관련한 경우에는 비상기획관이 운영책임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 운영책임자가 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책임관” 을 “운영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을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책임자” 를 각각 “운영책임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발송” 을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재난문자의 중복내용 송출차단” 을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 ④ 야간, 휴일 등 운영책임자 부재 시에는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이 운영책임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민방공 경보 관련은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 를 “재난문자방송의 사용부서” 로,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을 “송출”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으로 인한 구 단위 이상의 학교 휴업 조치
2.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재난현장 긴급·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가. 재난대응과: 낙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테러, 정전 승강기 사고
 - 나. 예방과: 위험물 사고
3. 재난안전실
 - 가. 재난안전예방과: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 나. 도로시설과: 공동구 사고, 도로터널사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 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풍수해(대설)
 - 라.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대형사고
4. 주택실 주거정비과: 아파트공사장 붕괴
5.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6. 정원도시국
 - 가. 자연생태과: 산불
 - 나. 동물보호과: 가축질병

- 다. 산지방재과: 산사태 · 급경사지
- 7. 물순환안전국
 - 가. 수변감성도시과: 가뭄
 - 나. 치수안전과: 풍수해(태풍 · 호우), 댐붕괴
 - 다. 물재생시설과: 대규모 수질오염, 물재생센터 마비
- 8. 경제실 산업입지과: 산업시설생산 마비
- 9. 교통실
 - 가. 도시철도과: 도시 · 고속철도 대형사고, 지하철파업
 - 나. 버스정책과: 버스 총파업
 - 다. 택시정책과: 택시 총파업
 - 라. 물류정책과: 육상화물운송 마비
- 10. 기후환경본부
 - 가. 대기정책과: 대규모 황사(미세먼지 포함) 및 초미세먼지 발생
 - 나. 녹색에너지과: 전력, 원유수급, 도시가스 수급, 열공급 중단
 - 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라.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시설 마비
 - 마.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마비, 화학물질 유출사고
-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공연 · 행사장 안전사고
- 12. 시민건강국
 - 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마비
 - 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 다. 공공의료과: 병원시설 대형사고
- 13. 민생노동국
 - 가. 공정경제과: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나. 농수산유통과: 농수산물 유통마비
- 14. 디지털도시국
 - 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사고
 - 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 마비
- 15.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마비
- 16. 도시기반시설본부
 - 가. 시설국 토목부: 도로공사장 붕괴
 - 나.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공사장 붕괴
- 17. 서울아리수본부
 - 가. 생산부 생산관리과: 식 · 용수 사고
 - 나. 시설부 누수대응과: 대형 상수도 누수
 - 다. 시설부 시설건설과: 상수도공사장 붕괴
- 18.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한강수난사고
- 19. 서울교통공사: 소관 지하철 중단, 사고
- 20.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소관 지하철 중단, 사고

21. 남서울경전철(주): 소관 지하철 중단, 사고
 22. 우이신설경전철(주): 소관 지하철 중단, 사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예측 곤란한”을 “긴급한”으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를 “재난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통합발령시스템에”를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로, “시장에게 긴급재난 문자의 송출”을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시 표준문안”을 “시 별표 1의 표준문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송출기준)”을 “(발송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를 “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중 “시장은 긴급재난문자”를 “운영책임관은 재난문자방송”으로, “제도개선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을 “제도 및 기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준문안	주무부서
1	학교휴업	발생시	오늘(○/○) ○○으로 인하여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임시휴업함을 알려 드립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2	지진	발생시	0000-00-00 00:00 ○○ 00km 지역/해역 지진 규모 M0.0 발생. 진동이 멈춘 후 지진 옥외대피소로 대피/낙하물여진 주의.[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기상청→서울시민),발송 이후 필요시 추가 발송(서울시→서울시민)
			0000-00-00 00:00 ○○ 00km 지역/해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기상청→서울시민).미발송 필요시 발송(서울시→서울시민)
3	화산	화산분화 발생(예측) 시	○월○일 ○○산 화산분화, 추가 지진, 화산재 낙하 우려, 창문을 닫아 화산재 유입차단,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4	한파	특보 발효 시	오늘 저녁 서울지역에 한파가 예상되오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도관, 보일러 등 동파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기온 급강하 예상시	오늘 오후부터 서울전역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방한용품 착용, 미끄러짐 주의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내일 최저기온 -11도 예상, 계량기함 보온상태 점검, 장기간 외출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수도계량기 동파 동결 예방 조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5	폭염	특보 발효시	오늘 서울전역에 폭염이 심하오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등 안전수칙 준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6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사전대비	오늘 ○시 ○○구 ○○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오니 해당지역 및 인근 시민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오늘 ○시 ○○구 ○○로 ○○행사장에서 인파밀집 사고 발생, 해당지역 시민은 즉시 혼잡지역에서 대피하시고 인근 시민 및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7	공동구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경 ○○구 ○○공동구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지역 교통통제 중이오니 인근 시민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8	도로터널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터널 교통(화재)사고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 이용차량은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지하도상가 화재(가스누출) 사고 발생으로 추가사고 위험이 있으니, 즉시 대피 및 접근금지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10	지반침하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지반침하로 인하여 〇〇대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11	풍수해 (대설)	사전대비	금일 〇〇시~〇〇시까지 〇〇지역에 많은 눈 예상. 도로 결빙으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저속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대응방법	〇〇, 〇〇지역에 많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〇〇까지 대설 및 한파가 지속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유지,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고 결빙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 시 감속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어제 〇〇지역에 내린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위험하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난방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에 내린 눈은 인근 제설함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복구안내	대설로 인한 가스/전기/지역난방 고장 시, 가스안전공사(1544-4500)/전기안전공사(1588-7500)/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신고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12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안내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대교 붕괴(위험)으로 인하여 차량을 전면 통제하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교량안전과
13	아파트 공사장 붕괴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추가 붕괴,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14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추가피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시고, 차량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지역건축안전센터
15	산불	발생시	〇〇:〇〇경 〇〇동 〇〇산 산불 발생. 입산 자제 및 인근 주민, 등산객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대피권고	〇〇:〇〇경 〇〇동 〇〇산 산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〇〇)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대피명령	○○구 ○○산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 등산객은 산에서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발생위험	금일 ○○구 일대 대형산불 위험 경보 발령.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16	가축질병	전염병 발생시	오늘 ○○:○○경 ○구에서 조류독감(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동물보호과
		인체감염 예방	오늘 ○○:○○경 ○○지역 ○○ 발생. 감염 예방을 위해 조류나 동물의 사체 또는 분변을 만지지 마시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동물보호과
17	산사태 · 급경사지	발생 전	사전 대비	바람없이 나무가 흔들릴 때, 계곡에 흙탕물이 내려올 때 등 산사태 전조증상 발생 또는 위험 시 지정 대피소나 산과 떨어진 높은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주의보	오늘 ○○:○○경 ○○구 ○○지역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오니 산림주변 야외활동 자제와 입산금지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경보	오늘 ○○:○○경 ○○구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 산림주변 접근금지, 인근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대피 안내	오늘 ○○:○○경 ○○구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 산림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장소(○○)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주의단계)	오늘 ○○:○○경 ○○구에 비가 내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산림 주변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산에 있을 경우 산림 밖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경계단계)	오늘 ○○:○○경 ○○구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 입산금지 및 산림주변 접근금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심각단계)	오늘 ○○구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으니 입산금지 및 산림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18	가뭄	가뭄발령	오늘 ○○:○○경 서울 가뭄 주의단계 발령. 물 사용을 자제하시고, 텃밭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수변감성도시과
19	태풍	태풍 (사전 대비)	태풍 ○○ 북상중, ○○시 서울 영향권으로 강풍 대비 외출을 자제, 날리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 북상중, ○○일 아침 서울 영향권으로, 창문 사이 틈새 없도록 보강, 흔들리지 않게 고정, 유리 파손에 대비해 실내화를 준비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태풍 ○○ 북상중, ○○일 서울 영향권으로 간판, 창문 등은 고정하고, 화분 등은 실내로 이동조치, 침수 대비 집 주변 배수로 사전점검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일 오후 서울 영향권으로 주변 축대, 배수로, 지붕을 점검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간판, 화분 등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일 오후 서울 영향권으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화분 등은 고정해주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내습	태풍 ○○이 서울 지역을 지나고 있으니 가급적 외출 자제 바랍니다. 하천변, ○○교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 낙하물 피해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금일 ○○ 지역에 시간당 ○○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산사태, 붕괴, 침수 우려 시 인근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강풍으로 끊어진 전깃줄은 매우 위험하오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시고,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이 서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단단히 고정, 가스는 미리 차단,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금일 ○○ms 강풍과 시간당 ○○mm의 비가 예상되니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고정하고 날리기 쉬운 물건은 안전조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 북상으로 강풍과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침수 발생 시 인근 관공서, 지정된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상륙이후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해 맨홀 뚜껑이 갑작스럽게 솟아오를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고, 맨홀 구멍과 배수구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 도로나 교량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수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호우	특보 사전대처	금일 ○○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거주 지역의 정보(호우 피해가 발생한 적 있는지, 산사태나 침수위험 요인)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금일 ○○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특보 예보시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은 ○○(대피소 등)으로 대피해주세요.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이동 주차,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특보시	공동주택관리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지하공간에 물이 유입되면 즉시 대피 안내 및 진입 금지 시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는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하천이 범람하거나 대피 방송 시 하천 밖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호우 이후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으며,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이 용자	지하 주택/상가/주차장 등 지하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잠금 후 지상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에 물이 무릎 이상으로 차올라 혼자서 문을 열 수 없을 때는 신속히 전기 전원 차단 후 도움을 요청해 함께 문을 열고 지상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경사로 수압으로 차량 이동이 어려우니 즉시 몸만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진입도 금지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빗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려우니 지하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에서 대피할 때는 구두, 하이힐,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대피에 쉬우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난간을 잡고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집 건물 침수시	빗물이 차오르면 전기 차단 후 ○○○(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세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9에 신고 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문을 열고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 시 가스, 전기 차단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침수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가전제품은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되었던 집에 돌아왔을 때는 붕괴 사고에 주의합니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동, 일원, 아파트)지역에 침수 발생, 해당 지역 주민은 신속히 인근 대로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지역의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예보	○○구에 시간당 ○○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해 수방자재 설치, 침수 시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경보	○○동(구)지역에 침수 발생, 침수경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의 주민은 즉시 ○○학교, ○○복지회관(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대피명령	○○(동, 일원, 아파트)지역 침수로/○○천 범람으로 대피 명령을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현시간 이후 ○○학교, ○○복지회관(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도로침수 안전조치	급류가 발생해 교량이 잠겨 있는 경우,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하천 급류 발생 시, 얇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야 합니다.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물이 고인 곳으로 진입했다면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00km 이하로 주행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차량침수 안전조치	차량이 침수됐다면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둡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차량이 침수되어 내·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제봉으로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정전시	오늘 ○○:○○경 ○○동 일대에 정전 발생, 복구 중이니 전자기 전원을 끄고 손전등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하천통제	오늘 ○○:○○경 호우로 인하여 ○○천 범람이 우려되어 하천변 출입을 전면 통제하오니 접근 자제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도로통제	금일 호우로 ○○시부로 ○○지하차도(○○~○○방향) 통제 중으로 인근 차량은 우회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방향)가 ○○:○○부터 통제되었으니 우회하여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오늘 ○○시부로 ○○천 수위 상승으로 ○○도로(○○차도~○○JC) 전구간이 교통 통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인근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오늘 ○○:○○부터 ○○로(○○상류~○○대교 양방향), ○○교(양방향)가 교통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 및 안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금일 호우로 ○○:○○부터 ○○역에서 ○○아파트 일대(○○대로) 통제 중으로 인근 차량은 우회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20	댐붕괴	발생전	오늘 ○○시 ○○댐 손상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재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21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시	오늘 ○○구 ○○하천에 (기름, 화학물질) 오염 사고 발생. ○○하천 방제조치 중으로 인근 지역 주민은 하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물재생시설과
22	물재생센터 마비	발생시	오늘 ○○:○○경 ○○물재생센터 마비로 인해 ○○방류부 지점에 하수가 유입되니 수상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물재생시설과
23	낙뢰	발생시	오늘 ○○:○○경 ○○구 ○○지역 낙뢰 발생, 지역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4	다중시설 대형화재	발생시	오늘 ○○:○○경 ○○구 ○○동 ○○시장 내 ○○점포 화재 발생.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시민은 즉시 대피 및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피명령	오늘 ○○:○○경 ○○구 ○○동 ○○건물 화재 발생.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5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오늘 ○○:○○경 ○○구 ○○인근 사업장 인명사고 발생, 지역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주변도로 이용차량은 우회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6	대테러	총기·폭발물	오늘 ○○시 ○○지역 총기난사(폭발물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기타 수단	오늘 ○○시 ○○지역 ○○ 상황 발생. ○○ 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생물테러	오늘 ○○지역 생물 테러로 의심되는 ○○감염병 환자 발생. 외출을 자제하고 텔레비전 등에서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7	정전 승강기 사고	발생시	오늘 ○○시 ○○지역에 승강기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복구작업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28	위험물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로 〇〇 위험물 사고 발생. 사고장소 내 근무자는 즉시 대피하시고, 인근 시민은 우회 및 외출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9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발생시	오늘 〇시 〇〇지역 생활필수품 유통이 마비되었으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인근 지역 유통망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
30	농수산물 유통 마비	발생시	오늘 〇〇시 서울지역 농수산물 유통이 마비되었으니 시민들께서는 사외 지역 유통망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농수산물통과
31	정보통신 사고	통신두절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일대 〇〇사의 통신두절 사고로 〇〇사 사용자는 휴대폰 등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과
32	정보서비스 마비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사의 〇〇장애로 〇〇구 일대 각종 인터넷, SNS 등 정보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33	산업시설 생산 마비	발생 시	오늘 〇시 〇〇산업단지 노사분규 발생, 〇〇공급이 불가하오니 다른 곳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업입지과
34	도시철도 대형사고	사고 발생 시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〇〇역 간 연기 발생으로 〇〇역~〇〇역 간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차량 우회 협조	오늘 〇〇:〇〇경 지하철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으로 〇〇역 인근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인근 차량은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복구 완료 시	오늘 〇〇:〇〇경 지하철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〇〇시부터 열차 운영을 재개합니다.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5	고속철도 대형사고	사고 발생 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역 인근에서 열차 충돌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분은 운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차량 우회 협조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차량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복구 완료 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〇〇시부터 열차 운영을 재개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6	지하철 파업	파업시	오늘 〇시 〇호선 지하철 파업으로 〇호선 지연운행, 역별 시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7	버스 총파업	파업시	오늘 〇시 버스파업으로 〇〇지역이 버스운행이 중단되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버스정책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38	택시 총파업	파업시	오늘 ○시 택시파업으로 ○○시간대 택시공급이 부족하오니, 대중 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택시정책과
39	육상화물운 송마비	발생시	오늘 ○시 화물자동차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발생에 따라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됨을 알려 드립니다.[서울특별시청]	물류정책과
40	대규모 황사	황사경보	오늘 황사가 심하오니.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실내 유입 차 단,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서울 특별시청]	대기정책과
41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오늘 00:00 미세먼지 경보.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대중 교통 이용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 니다.[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일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이 용 동참,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 다.[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42	전력	대규모 정전 발생	오늘 ○○:○○경 ○○지역 정전으로 복구 중이니, 전기기기의 모 든 전원을 끄고 손전등 사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3	원유수급분 야	수급불안	오늘 ○○시 원유 수급 심각 단계 발령. 사재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제하고, 원유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4	도시가스 수급	가스폭발	오늘 ○○:○○경 ○○구 ○○공급관리소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인근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해당 지역 접근 자 제 및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5	열공급 중단	중단시	오늘 ○○:○○경 ○○지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로 긴급 보수공사 를 위해 열공급(급탕,난방)이 일시 중단됩니다. ○○경 복구 예정 입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6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반입중단	수도권매립지 ○○사고로 인해 쓰레기반입 중단, 쓰레기 배출 시 해당 구청 청소대책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원순환과
47	소각시설 마비	반입중단	○○자원회수시설 긴급보수로 쓰레기반입 중단, 쓰레기 배출 시 구청 청소대책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원회수시설과
4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운영중단	오늘 ○○:○○경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파업으로 쓰레기 처리가 불가하오니, 쓰레기 배출 시 구청 안내에 따라 협조 바랍니다.[서 울특별시청]	생활환경과
49	화학물질 유출사고	유해화학물 질 유출사고	< 실내대피 주민알림(사고발생지역 대상 주민) > 오늘 ○○:○○경 ○○구 ○○동 ○○(사업장)에서 ○○물질 누출 발생. ○○ 지역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 중지 후 다음 안내까 지 실내 대기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생활환경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상황종료 알림>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동 〇〇(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대응 완료되어 실내대피 종료 및 일상생활 복귀바랍니다.	생활환경과
50	공연·행사 장 안전사고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〇공연장 사고 발생. 공연장 내 시민은 즉시 대피, 인근 시민 및 차량은 접근자제 및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과
51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 마비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〇병원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예상되오니 다른 병원을 이용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52	감염병	예방안내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지역 〇〇〇유행,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및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53	병원시설 대형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〇병원 〇〇사고로 인하여 병원이용이 불가하오니 다른 병원을 이용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공공의료과
54	시청사 마비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서울시청 점거농성으로 인해 청사이용이 불가하오니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55	도로공사장 붕괴	붕괴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도로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인근 시민은 즉시 대피하고, 접근 자제 및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56	지하철공사 장 붕괴	대형사고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발생, 인근 시민은 즉시 대피하고, 접근 자제 및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57	식·용수 사고	식용수	<수질 악화 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구 〇〇정수장 수질 사고 발생. 〇〇시부터 〇〇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대비 바랍니다.(〇시경에 비상급수 공급 예정)[서울특별시청]	서울아리수본부 생산관리과
			<운영 중단 시> 오늘 〇〇구 〇〇〇정수장 일시 가동 중단으로 〇시부터 〇〇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〇시경에 비상급수 공급 예정)	서울아리수본부 생산관리과
58	대형상수도 누수	대형상수도 누수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지역 누수발생으로 급수중단 및 급수차량에 의한 비상급수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59	상수도 공사장 붕괴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지역 상수도공사 중 관로 파손으로 〇〇가 침수되어 지하철 이용이 불가하오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건설과
60	한강 수난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대교 아래 한강 수난사고 구조작업 중이오니 시민들께서는 한강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61	도시철도, 지하철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〇〇경 〇호선 전원공급장치 이상으로 모든 열차 운행 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오니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운행상황 확인 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 [기관명]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오늘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역 선로고장으로 양방향 운행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오니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운행상황 확인 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 [기관명]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남서울경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오늘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역 관제시스템 제어불능으로 〇〇선 운행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오니(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운행상황 확인 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 [기관명]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하철 궤도 이탈 사고 수습으로 〇호선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명]	
			오늘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〇〇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우회바랍니다. [기관명]	
			오늘 〇〇:〇〇경 〇〇역 인근 〇〇사고는 〇〇:〇〇경 복구 완료. 정상 운영까지는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신 후 이용 바랍니다.[기관명]	
			오늘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〇〇사고 구간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〇〇시부터 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관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이 개정('24. 6.)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춰 정비하고,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함(제1조부터 제2조, 제4조 및 제7조)
- 나. 재난유형 및 사용부서 등을 현행화 함(제5조)
- 다. 긴급한 재난발생을 대비한 재난문자방송 별도 승인권자 지정(제4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